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6호

특정 시장에 참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부채: 폐전기·전자제품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07. 11. 23.

### 저작권

국제회계기준(IFRSs) 및 부속 출판물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IASB)가 발표한 것입니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7 Westferry Circus, Canary Wharf, London E14 4HD, United Kingdom.

Tel: +44 (0)20 7246 6410 Fax: +44 (0)20 7246 6411

Email: info@ifrs.org Web: www.ifrs.org

Copyright © 2025 IFRS Foundation

국제회계기준위원회, 국제회계기준재단(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Foundation: IFRS Foundation) 및 이 출판물의 저작자와 출판자는, 이 출판물에 의거하여 행위를 하거나 행위를 하지 않은 자의 부주의 등 여하한 원인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국제회계기준(IAS) 및 해석서(Interpretations)를 포함하는 국제회계기준(IFRSs)은 국제회계기준재단에 저작권이 있습니다. 국제회계기준(IFRSs)의 정본은 IASB가 발표한 영문판입니다. 사본은 국제회계기준재단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출판 및 저작권에 대해서는 아래 연락처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IFRS Foundation Publications Department

7 Westferry Circus, Canary Wharf, London E14 4HD, United Kingdom.

Tel: +44 (0)20 7332 2730 Fax: +44 (0)20 7332 2749 Email: publications@ifrs.org Web: www.ifrs.org

모든 저작권은 보호됩니다. 국제회계기준재단의 서면에 의한 사전승인이 없이, 이 출판물의 일부 또는 전부의 번역, 재인쇄, 재출간 또는 전자, 기계 또는 기타의 방법(복사와 리코딩을 포함한 정보저장과 검색의 방법으로서 알려진 것과 이후 개발될 것을 포함)에 의한 형태의 사용이 금지됩니다.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는 국제회계기준재단의 동의 하에 국제회계기준과 이 출판물에 포함된 관련 문서들의 한국어 번역을 승인했습니다. 한국어 번역판에 대한 저작권은 국제회계기준재단에게 있습니다. 한국어 번역판은 국제회계기준재단이나 한국회계기준원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한국회계기준원의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39, 대한상공회의소빌딩 3층, 04513, 전화: +82 (0)2 6050-0150, 팩스: +82 (0)2 6050-0170, 이메일: webmaster@kasb.or.kr, 홈페이지: www.kasb.or.kr

국제회계기준재단은 정부의 동의를 얻어 한국 내에서 사용하는 경우와 한국 내에 소재하는 기업의 해외 종속기업, 공동기업, 관계기업 또는 지점의 한국 이외 지역에서의 사용과 관련하여, 한국어로 구성된 일부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주장할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이러한 저작물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 또는 채택한 번호가 매겨진 모든 국제회계기준(IAS) 및 국제재무보고기준(IFRS)의 본문, 또는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IFRS IC)나 상설해석위원회(SIC)가 발표한 해석서의 본문(이하 '기준서 본문')으로 구성됩니다.

한국 내에서 사용하는 경우와 한국 내에 소재하는 기업의 해외 종속기업, 공동기업, 관계기업 또는 지점이 한국 이외의 지역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준서 본문을 한국어로 재출간할수 있습니다.

국제회계기준재단은 한국 이외 지역에서의 모든 권리와 한국 내에 소재하는 기업의 해외 종속기업, 공동기업, 관계기업 또는 지점이 한국 이외의 지역에서 한국어로 구성된 기준서 본문을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권리를 보유합니다.

### COPYRIGHT NOTICE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IFRSs) together with their accompanying documents are issued by the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IASB):

7 Westferry Circus, Canary Wharf, London E14 4HD, United Kingdom.

Tel: +44 (0)20 7246 6410 Fax: +44 (0)20 7246 6411

Email: info@ifrs.org Web: www.ifrs.org

Copyright © 2025 IFRS Foundation

The IASB, the IFRS Foundation, the authors and the publishers do not accept responsibility for loss caused to any person who acts or refrains from acting in reliance on the material in this publication, whether such loss is caused by negligence or otherwise.

IFRSs (which include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and Interpretations) are copyright of the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IFRS) Foundation. The authoritative text of IFRSs is that issued by the IASB in the English language. Copies may be obtained from the IFRS Foundation Publications Department. Please address publication and copyright matters to:

IFRS Foundation Publications Department

7 Westferry Circus, Canary Wharf, London E14 4HD, United Kingdom.

Tel: +44 (0)20 7332 2730 Fax: +44 (0)20 7332 2749 Email: publications@ifrs.org Web: www.ifrs.org

All rights reserved. No part of this publication may be translated, reprinted or reproduced or utilised in any form either in whole or in part or by any electronic, mechanical or other means, now known or hereafter invented, including photocopying and recording, or in any information storage and retrieval system, without prior permission in writing from the IFRS Foundation.

The Korean translation of the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and related material contained in this publication has been approved by the Korea Accounting Standards Board in Korea with the permission of the IFRS Foundation. The Korean translation is the copyright of the IFRS Foundation. Copies of the Korean translation may be obtained from the IFRS Foundation or the KASB, KCCI Building 3rd Flr., 39 Sejong-daero, Jung-gu, Seoul, 04513, Korea.

Tel: +82 (0)2 6050 0150 Fax: +82 (0)2 6050 0170 Email: webmaster@kasb.or.kr

Web: www.kasb.or.kr

The IFRS Foundation has waived the right to assert its copyright in certain materials in the Korean language, such materials consist of all numbered, bare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IASs) and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IFRSs) in the form that they are issued or adopted by the IASB, or Interpretations issued by the IFRS Interpretations Committee (IFRS IC) or Standing Interpretations Committee (SIC) (hereinafter referred to as 'integral part of the standards'), in the territory of the Republic of Korea with sovereign consent and in connection with any use of the integral part of the standards outside of the Republic of Korea by any foreign subsidiary, joint venture, associate or branch of a corporation, which resides in the Republic of Korea.

Reproduction of the integral part of the standards in the Korean language is permitted for any use within the Republic of Korea and by any foreign subsidiary, joint venture, associate or branch of a corporation, which resid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IFRS Foundation reserves all rights outside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in any use other than use of the integral part of the standards in the Korean language by any foreign subsidiary, joint venture, associate or branch of a corporation, which resides in the Republic of Korea.



### 목 차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6호 '특정 시장에 참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부채: 폐전기·전자제품'

	문단번호
참조	
배경	1~5
적용	한6.1
적용범위	6~7
회계 <del>논</del> 제	8
결론	9
시행일	10~한10.1
경과규정	11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6호의 제·개정 등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 결론도출근거, 기타 참고사항은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6호를 구성하지는 않으나 해석서를 적용하는 데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제시된다.

### [결론도출근거]

IFRIC 6의 결론도출근거 (BC1-BC10)

### [기타 참고사항]

국제회계기준과의 관계

이 해석서의 주요 특징

제·개정 경과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6호 '특정 시장에 참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부채: 폐전기·전자제품'은 문단 1~11로 구성되어 있으며, 결론도출근거가 첨부되어 있다. 해석서의 적용범위와 효력은 '기업회계기준 전문'의 문단 24와 25에서 규정한다.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6호 특정 시장에 참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부채: 폐전기 · 전자제품

### 참조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 배경

-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문단 17에서는 의무발생사건을 의무의 이행 외에는 현실적인 대안이 없는 현재의무가 생기게 하는 과거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문단 19에서는 '기업의 미래 행위와 관계없이 존재하는 과거사건에서 생긴 의무'를 충당부채로 인식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 3 유럽연합은 폐기물의 수거, 처리, 재생 및 환경 친화적인 폐기를 규제하는 폐전기·전자제품에 대한 지침(이하 '유럽연합지침'이라 한다)을 제정하였다. 이로 인하여 폐전기·전자제품의 사후처리에 관련된 부채의 인식시점에 대하여 질문이 제기되었다. 유럽연합지침에서는 '신폐기물'과 '구폐기물'을 구분하고 있으며, 최종소비가 전폐기물과 최종소비가전제품 이외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도 구분하고 있다. 2005년 8월 13일 후에 판매된 제품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신폐기물이라고 하며, 그 이전에 판매된 모든 가전제품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유럽연합지침의 목적상 구폐기물로 간주한다.

- 4 유럽연합지침에서는 구최종소비가전제품으로 인해 발생하는 폐기물 관리원가는 각 회원국의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기간(측정기간)에 시장에 참여하는 해당 제품류의 생산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럽연합지침에 따르면 각 회원국은 생산자에게 원가를 비 례적으로 부담하게 하는 정형화된 절차(예를 들어, 제품종류별로 생산자들 각각의 시장점유율에 비례하여 부담하게 하는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 이 해석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장점유율', '측정기간' 등의 용어는 각 회원국의 관련 법규마다 매우 다르게 정의될 수 있다. 예를들어, 측정기간은 일 년이 될 수도 있고 한 달이 될 수도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시장점유율의 측정과 의무를 산정하는 방식도해당 국가별 법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예는 부채의 측정에만 영향을 주며 부채의 측정은 이 해석서의 적용범위가 아니다.

### 적용

한6.1 이 해석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의무적용대상 주식회사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또한 이 해석서는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적용을 선택하거나 다른 법령 등에서 적용을요구하는 기업 회계처리에도 적용한다.

### 적용범위

6 이 해석서는 구최종소비가전제품의 판매에 따른 폐기물 관리를 위한 부채를 폐전기·전자제품에 관한 유럽연합지침에 따라 생산 자의 재무제표에 인식하는 데 필요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이 해석서는 신폐기물에 대하여 다루지 아니하며, 최종소비가전제품 이외에서 발생하는 구폐기물에 대하여도 다루지 아니한다. 그러한 폐기물관리를 위한 부채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에서 적절히 다루고 있다. 그러나 해당 국가의 법규에서 최종소비가전제품에서 발생한 신폐기물을 최종소비가전제품에서 발생한 구폐기물과 유사한 방법으로 다루고 있다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문단 10~12의 서열체계에 근거하여 이 해석서의 원칙을 적용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의 서열체계는 유럽연합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가귀속모형과 유사한 방법으로 의무를 부과하는 다른 규정에도 적합하게 적용된다.

### 회계논제

- 8 유럽연합지침의 사후처리규정 준수를 위해 기업회계기준서 제 1037호 문단 14(1)에 따라 폐전기·전자제품의 사후처리로 인한 폐기물 관리원가를 충당부채로 인식하여야 하는 의무발생사건은 다음 중 어느 것인가?
  - 구최종소비가전제품의 제조나 판매
  - 측정기간에 관련시장 참여
  - 폐기물 관리활동의 수행에 따른 원가발생

### 결론

9 측정기간에 관련시장에 참여하는 것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문단 14(1)에 따른 의무발생사건에 해당한다. 따라서 구최종소비가 전제품의 제조나 판매시에는 그 제품의 폐기물 관리원가에 대한 부채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구최종소비가전제품에 대한 의무는 최 종처분될 제품의 제조나 판매보다는 측정기간에 관련시장에 참여 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측정기간에 시장점유율이 없다 면 즉, 관련시장에 참여하기 전까지는 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의무발생사건의 시점은 폐기물관리활동을 수행하고 관련 원가가 발생하는 특정 기간과 무관할 수도 있다.

### 시행일

- 10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 한10.1 이 해석서는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 용할 수 있다.

### 경과규정

11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6호의 제·개정 등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6호의 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07년)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6호 '특정 시장에 참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부채: 폐전기·전자제품'의 제정(2007.11.23.)은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7인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이효익(위원장), 서정우(상임위원), 김성남, 윤순석, 최상태, 황성식, 황인태

# 결론도출근거

한국회계기준원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정시 기준서를 제정한 과정 등을 기술하여 결론도출근거로 제공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IASB가 제정한 국제회계기준에 근거하여 제정되었으므로, IASB가 동 기준 제정시 제시한 결론도출근거를 반영하여 제공함으로써 이를 갈음하고자한다.

다만, 한국회계기준원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나 국제회계기준의 제·개정 절차에 참여한 경우, 이와 관련된 내용을 국제회계기준의 결론도출근거와 구 분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결론도출근거로 별도 제시한다.

### IFRIC 6의 결론도출근거 관련 참고사항

- 이 결론도출근거는 국제회계기준의 제정주체(IASB, IASC, IFRIC 등)가 IFRS를 제정한 과정과 외부의견 등에 대한 논의내용 등을 기술한 것이다.
- 이 결론도출근거는 국제회계기준의 이용자를 위해 IASB가 작성한 문서 이지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이해하는데 매우 유용하므로 원문을 번 역하여 제공한다.
- 이 결론도출근거에 언급되는 국제회계기준의 개별 기준서 및 해석서에 각각 대응되는 K-IFRS의 개별 기준서 및 해석서를 이용자들이 보다 쉽 게 파악할 수 있도록 아래의 대응표를 제시한다.

국제회계기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IAS 37 Provision, Contingent Liabilities and Contingents Assets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 자산

# IFRIC 6 '특정 시장에 참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부채: 폐전기·전자제품 (Liabilities arising from Participating in a Specific Market-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의 결론도출근거

이 결론도출근거는 IFRIC 6에 첨부되지만, 이 해석서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 은 아니다.

- BC1 IFRIC이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고려한 사항을 이 결론도출근 거에서 요약한다. IFRIC 위원들은 개인에 따라 일부 사항을 다른 사항들보다 더 비중 있게 고려하였다.
- BC2 IFRIC은 유럽연합의 폐전기·전자제품에 대한 지침(이하 '유럽연합지침'이라 한다.)으로 인해 일부 폐전기·전자제품의 사후처리에 관련된 부채의 인식시점에 대하여 질문이 제기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하여 IFRIC은 유럽연합지침으로 초래된 상황에서 무엇이 의무발생사건을 구성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게 될해석서를 마련하기로 결정하였다.
- BC3 IFRIC의 제안은 2004년 11월에 발표된 해석 공개초안 제10호 (D10) '특정시장에 참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부채: 폐전기·전자제품 (Liabilities arising from Participating in a Specific Market: 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에 기술되어 있다. IFRIC은 이러한 제안에 대하여 22개의 외부검토의견서를 접수하였다.
- BC4 유럽연합지침에 따르면 폐기물 관리원가에 대한 의무를 발생시키는 것은 측정기간에 관련시장에 참여하는 것이다.
- BC5 예를 들어, 20X4년에 전기제품을 판매한 기업이 그 연도에 4%의 시장점유율 갖고 있다. 이 기업은 그 후 영업을 중단하였고 제품

에 대한 폐기물 관리원가를 20X7년에 시장점유율을 갖고 있는 기업들에게 배분하려고 할 때, 더 이상 그 시장에 존재하지 않는다. 20X7년에 시장점유율이 0%인 기업은 의무가 없다. 그러나 만일다른 기업이 20X7년에 전자제품시장에 진입하여 3%의 시장점유율을 달성한다면, 비록 이 기업이 이전 기간에는 시장에 참여하지않았고 20X7년에 배분될 폐기관리원가와 관련된 어떤 제품도 생산하지 않았더라도, 이전 기간의 폐기물 관리원가에 대한 이 기업의 의무는 20X7년에 배분될 전체 폐기물 관리원가의 3%일 것이다.

- BC6 IFRIC은 유럽연합지침에서 명시하고 있는 원가귀속모형으로 인해 측정기간 동안 판매하는 것은 IAS 37에 따라 그 측정기간에 걸쳐 충당부채를 인식하여야 하는 '과거사건'으로 결론지었다. 해당 기간의 총판매에 따라 그 기간에 배분되는 폐기물 관리원가의 비례적 부분으로 기업의 의무가 결정된다. 측정기간은 원가배분이 시장참여자에게 통지되는 기간과는 무관하다. 또한 의무발생사건의시기도 폐기물 관리활동이 수행되고 관련 원가가 발생하는 특정기간과 무관할 수 있다. 폐기물 관리활동 수행으로 인해 발생하는원가는 그러한 활동의 최종 원가를 분담하는 의무의 발생과는 별개의 문제이다.
- BC7 일부 관계자들은 IFRIC에게 생산자가 특정 기간(예: 20X6)에 관련 시장에 참여하기 때문에 책임지는 폐기물 관리원가는 그 기간 동안 생산자의 시장점유율에 근거하지 않고, 그 이전 기간(예: 20X5) 동안에 생산자의 관련시장 참여에 근거하도록 국내 법규가 제정되는 경우의 영향을 고려하도록 요청하였다. IFRIC은 이것은 부채측정에만 영향을 주고, 의무발생사건은 여전히 20X6년에 관련시장에 참여한 것이라는 데 주목하였다.

BC8 IFRIC은 이 결론이 기업이 계속기업으로서 영업을 계속할 것이라는 원칙으로 인해 약화되는지를 고려하였다. 만일 기업이 미래에 영업을 계속한다면, 기업은 그것에 대한 원가를 미래원가로 처리한다. 이러한 미래원가에 대하여 IAS 37 문단 18에서는 '재무제표는 미래 시점의 예상 재무상태가 아니라 보고기간 말의 재무상태를 표시하는 것이므로, 미래 영업에서 생길 원가는 충당부채로 인식하지 아니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BC9 IFRIC은 최종소비가전제품으로 사용되는 제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것이 의제의무를 발생시키는 과거사건이 된다는 주장을 고려하였다. 시장점유율에 따라 폐기물 관리원가를 배분하는 것은 인식보다는 측정의 문제가 될 것이다. 이러한 주장에 대한 지지자들은 IAS 37 문단 10의 의제의무의 정의를 강조하고, 기업의 과거행위가 의무를 발생시키는지 결정할 때, 실무의 변경이 현실적인 대안인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의견제출자들은 기업이 의무를 피하기 위하여 비현실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 필요하게될 의제의무가 존재하고 그 의제의무를 회계처리하여야 한다고생각하였다.

BC10 IFRIC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미래의 측정기간 동안 시장에 참여하겠다는 의도를 공표하는 것은 미래의 폐기물 관리원가에 대한 의제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IAS 37 문단 19에 따라, 충당부채는 기업의 미래행위에 관계없이 발생하는 의무에 대해서만 인식될 수 있다. 구최종소비가전제품의 경우 의무는 기업의 미래행위에 의해서만 발생한다. 만일 기업이 측정기간에 시장점유율을 갖고 있지 않다면, 과거에 제조하였거나판매한 유형의 제품과 관련된 폐기물 관리원가에 대한 의무는 없다. 이러한 점이 예를 들어, 기업이 관련시장에서 떠나더라도 법적의무를 나타내는 보증(IAS 37의 부록 C의 사례 1 참조)과 폐기물 관리원가를 구별 짓는다. 결과적으로 그 기업이 측정기간 동안

관련시장에 참여하기 전까지는 미래 폐기물 관리원가에 대한 의 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 기타 참고사항

### 국제회계기준과의 관계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6호와 국제재무보고기준해석 제6호(IFRIC6)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6호는 국제재무보고기준해석위원회가 제정한 국제 회계기준해석 제6호(IFRIC 6) '특정 시장에 참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부채: 폐전 기·전자제품(Liabilities arising from Participating in a Specific Market-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에 대응하는 해석이다.

한국의 법률체계와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형식적인 부분이 제한적으로 수정되었다. 즉,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의무적용대상기업과 적용시기를 명시하기 위하여 문단 한6.1과 한10.1이 추가되었으며, 적용시기 이후 최초채택기업으로서 이 해석서를 적용하게 됨에 따라 시행일 및 경과규정과 관련된문단 10과 11이 삭제되었다. 이러한 수정을 명시적으로 표시하기 위하여 동국제회계기준에 추가한 문단은 관련된 국제회계기준 문단번호에 '한'이라는접두어를 붙여 구분 표시하였다. 그리고 동 국제회계기준의 문단을 삭제한 경우는 관련된 국제회계기준 문단번호 옆에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삭제함]'이라고 표시하였다.

### 국제재무보고기준해석 제6호(IFRIC 6)의 준수

형식과 관련하여 수정된 위의 문단들을 제외하고는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 2106호가 IFRIC 6의 내용에 근거하여 제정되었기 때문에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6호를 준수하면 동시에 IFRIC 6를 준수하는 것이 된다.

### 이 해석서의 주요 특징

이 해석서는 구최종소비가전제품의 판매에 따른 폐기물 관리를 위한 부채를 폐전기·전자제품에 관한 유럽연합지침에 따라 생산자의 재무제표에 인식하는 데 필요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 1. 해석서의 목적

이 해석서의 목적은 구최종소비가전제품의 판매에 따른 폐기물 관리를 위한 부채를 폐전기·전자제품에 관한 유럽연합지침에 따라 생산자의 재 무제표에 인식하는 데 필요한 지침을 제공하는 데 있다.

### 2. 적용범위

해당 국가의 법규에서 최종소비가전제품에서 발생한 신폐기물을 최종소비가전제품에서 발생한 구폐기물과 유사한 방법으로 다루고 있다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문단 10~12의 서열체계에 근거하여 이 해석서의 원칙을 적용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의 서열체계는 유럽연합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가귀속모형과 유사한 방법으로 의무를 부과하는 다른 규정에도 적합하게 적용된다.

### 3. 구최종소비가전제품의 판매에 따른 폐기물 관리를 위한 부채의 인식

측정기간에 관련시장에 참여하는 것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문단 14(1)에 따른 의무발생사건에 해당한다. 따라서 구최종소비가전제품의 제조나 판매시에는 그 제품의 폐기관리원가에 대한 부채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구최종소비가전제품에 대한 의무는 최종처분될 제품의 제조나 판매보다는 측정기간에 관련시장의 참여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측정기간에 시장점유율이 없다면 즉, 관련시장에 참여하기 전까지는 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의무발생사건의 시점은 폐기물관리활동을 수행하고 관련원가가 발생하는 특정 기간과 무관할 수도 있다.

### 제·개정 경과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한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기업회계기준의 일부로 구성하기로 한 정책에 따라 이 기준서를 다음과 같이 제·개정하였다.

제·개정일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관련되는 국제회계기준
2007.11.23. 제정	특정 시장에 참여함에	IFRIC 6 Liabilities arising from
	따라 발생하는 부채:	Participating in a Specific
	폐전기·전자제품	Market-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